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대검찰청

대변인실

전화 02-3480-2100 /

팩스 02-3480-2704

## 보도자료

2024. 7. 9.(화)

자료문의 : 공안수사지원과  
전화번호 : 02-3480-2610  
주책임자 : 공안수사지원과장

제 목

### 납북·귀환어부 103명 2차 검찰 직권재심 착수 - 1차 직권재심 100명에 이어 2차 재심 -

- 대검찰청은 1971. 8.~10.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되었다가 1972. 9. 귀환 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승운호 등 7척의 납북·귀환어부 103명에 대하여 오늘(7.9.) 관할 3개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, 기소유예 처분 변경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음
- 이는 납북·귀환어부와 관련하여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한 두 번째 직권 재심청구 사례이고,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히 불기소로 처분 변경을 지시하였음
- 그간 검찰은 납북·귀환어부 사건 외에도 제주4·3사건, 5·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하여 직권재심 청구와 처분 변경 등을 진행해왔고, 비상계엄 당시 군법회의에서 위법한 처벌을 받은 육군 일병을 위해 비상상고를 제기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
- 앞으로도 검찰은 납북·귀환어부 등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음

# 1

## 남북·귀환어부 일괄 직권재심 청구 등 지시

- 대검찰청은 강제 납북되었다가 1972. 9. 7.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**남북·귀환어부 103명**에 대하여 직권재심 청구 등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음

### [남북·귀환어부 사건 개요]

- ▶ 남북·귀환어부는 동·서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선원들을 지칭함
- ▶ 1960년대 북한의 대남공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납북 방지를 위하여 어로저지선을 남하하는 조치를 취하고, 1968. 11. ‘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납북된 선원에 대해서는 반공법을 적용하여 구속하겠다’는 강경대응 방침을 선포하였음
- ▶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은 후 반공법위반,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, 형사처벌 이외에도 간첩·빨갱이 등으로 낙인 찍혀 취업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

- 앞서(2023. 5. 16.) 대검찰청은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9. 5. 28. 강원도 고성군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남북·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하여 현재까지 직권재심이 청구된 78명 중 59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(19명은 재판 계속 중)

※ 100명 중 대상자(유족)가 재심 청구에 동의하는 78명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

### < 남북·귀환어부 1차 직권재심 현황 >

연번	관할 검찰청	대상자	직권 재심청구(무죄)	당사자 재심청구(무죄)	무죄 선고
1	춘천지검	1	1 (1)	- -	1
2	강릉지청	22	19 (0)	1 (0)	0
3	속초지청	70	53 (53)	7 (7)	60
4	대구지검	2	1 (1)	- -	1
5	영덕지청	5	4 (4)	- -	4
합계(명)		100	78 (59)	8 (7)	66

- 이번 대검찰청의 직권 재심청구 지시는 1972. 9. 7. 속초항으로 귀환한 승운호 등 총 7척의 납북·귀환어부 160명에 관한 것으로 납북·귀환어부에 대한 두 번째 직권재심 청구 사례임
- 이들은 1971. 8.~10.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되었다가 1972. 9. 귀환하여 합동신문반에서 2주간 심문을 받았고, 관할 경찰서에 인계되어 구금 상태로 수사받은 후 기소되었음

< 납북·귀환어부 2차 직권재심 대상사건 개요 >

연번	선박명	죄명	선고형
1	[승운호] 선원 2명	① 어로저지선, 군사분계선 월선[수산업법위반, 반공법위반] ② 북한에 체류하며 북한 찬양[반공법위반] ③ 북한에 체류하고 귀환하면서 금품수수[국가보안법위반]	(선원 2명) 징역 1년 집유 2년
2	[고흥호] 선장 등 22명	① 어로저지선, 군사분계선 월선[수산업법위반, 반공법위반] ② 북한에 체류하며 북한 찬양[반공법위반] ③ 북한 체제를 선전하라는 지령을 받음 [반공법위반] ④ 북한에 체류하고 귀환하면서 금품수수[국가보안법위반]	(선장) 징역 1년 (선원 21명) 징역 1년 집유 2년
3	[탁성호] 선장 등 24명	어로저지선, 군사분계선 월선[수산업법위반, 반공법위반]	(선장) 징역 2년 (기관장) 징역 2년 집유 4년 (선원 22명) 징역 1년 6월 집유 2년
4	[대북호] 기관장 등 15명	어로저지선, 군사분계선 월선[수산업법위반, 반공법위반] * 기소유예 처분 6명(선원)	(기관장) 징역 1년 (선원 8명) 징역 1년 집유 3년
5	[6해부호] 기관장 등 11명	① 어로저지선, 군사분계선 월선[수산업법위반, 반공법위반] ② 북한에 체류하며 북한 찬양[반공법위반] ③ 북한에 체류하고 귀환하면서 금품수수[국가보안법위반]	(기관장) 징역 1년 (선원 10명) 징역 1년 집유 2년
6	[2승해호] 선원 12명	① 어로저지선, 군사분계선 월선[수산업법위반, 반공법위반] ② 북한에 체류하며 북한 찬양 [반공법위반] ③ 북한에 체류하고 귀환하면서 금품수수[국가보안법위반]	(선원 12명) 징역 1년 집유 2년
7	[명성3호] 기관장 등 17명	① 어로저지선, 군사분계선 월선[수산업법위반, 반공법위반] ② 북한에 체류하며 북한 찬양 [반공법위반] ③ 북한 체제를 선전하라는 지령을 받음 [반공법위반] ④ 북한에 체류하고 귀환하면서 금품수수[국가보안법위반]	(기관장) 징역 1년 (선원 16명) 징역 1년 집유 2년

- 대검찰청은 선원 160명에 대한 형사사건부,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, 1972. 9. 7. 귀환한 납북어부 160명이 집단 수용된 후 같은 달 14.까지 합동신문을 받았고, 같은 달 15. 각 관할경찰서 등으로 인계된 후 같은 달 21.~10. 3. 구속영장 집행(88명 구속, 72명 불구속)되어, 구속영장 집행 전 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것을 확인하였음

- 이에 대검찰청은 납북·귀환어부 160명 중 이미 재심 청구된 57명을 제외한 103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, 기소유예 처분 변경을 지시하였음

< 각 관할 검찰청별 현황 >

연번	관할 검찰청	총 인원	직권재심 청구 대상자	기소유예 처분변경 대상자	제외 (既 청구재심)
1	춘천지검	64	64	-	46
2	강릉지청	15	9	6	4
3	순천지청	24	24	-	7
합계		103	97	6	57

## 2 검찰의 과거사 사건 관련 명예회복 조치

- 검찰은 납북·귀환어부 사건 이외에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

### ① 제주4·3사건

- 대검찰청은 '22. 8. 「제주 4·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상 직권재심 대상이던 '군법회의 수형인' 이외에 '일반재판 수형인' 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여, 현재까지 1,711명(군법회의 1,570명, 일반재판 141명)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, 1,551명(군법회의 1,450명, 일반재판 101명)이 무죄를 선고받았음

### ② 5·18민주화운동

- 대검찰청은 2022. 5. 전국 검찰청에 '5·18민주화운동'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 변경을 지시하여, 현재까지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115명에 대하여 '죄안됨'으로 처분 변경을 하였음

※ '5·18민주화운동'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하여 182명 무죄 선고(1명 재판 계속 중)

### ㉓ 비상상고 제기

- 1980. 5. 육군 일병인 피고인이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사안에서, 검찰총장은 2022. 11. 8. 위 판결이 기속력에 위반되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비상상고를 제기하였음
-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2024. 6. 27. 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

## 3

### 향후 계획

-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하고 처분 변경을 함에 따라 피고인, 피의자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,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
- 앞으로도 검찰은 납북·귀환어부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음 ☑